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613

발의연월일: 2022. 9. 29.

발 의 자:김선교·조수진·서범수

김용판 • 태영호 • 이철규

이종성 · 김정재 · 구자근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 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 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 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61조제1호 단서 중 "제2조제2호 및"을 "제2조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5 및 제61 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6의4. (생 략)	1. ~ 6의4.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파
	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u>다)</u>
7. · 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제61조(당연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 1조제5호는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u>]
2조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
2조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u>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u> <u>및</u>
<u>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u> <u>및</u>
<u>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u> <u>및</u>